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의 옳바른 적용

교수 박사 강철수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과는 돈계산을 똑똑히 하여 받아낼것은 다 받아내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7권 182폐지)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자면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 가격적용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측 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우리측 투자가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직되며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경영활동을 벌려나간다. 그러므로 외국투자기업 의 설립을 위한 출자몫확정과 운영과정, 재산평가, 무역거래과정에는 국제시장가격이 적 용된다.

대외경제관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한다는것은 외국투자기업이 대외무역거 래와 외국투자거래에서 국제시장가격을 공정하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리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출자하는 외 국측 투자가들의 기업활동상편의를 보장하면서도 나라의 경제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중 요한 담보이다.

지난 시기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는 국제시장가격적용문제에 대하여 론의된것이 없었다. 론문은 지난 시기 국제시장가격적용문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국제시장가격의 특성,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의 옳바른 적용의 기본내용과 방도를 과학리론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2. 본론

2.1. 국제시장가격의 특성

국제시장가격은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국제시장가격의 특성은 첫째로, 국제적범위에서 평균화된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격이 형성된다는것이다.

국내생산물가격은 한 나라 범위에서 평균화된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되지만 국제시장가격은 상품의 국제적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상품의 국제 적가치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데 지출되는 개별적나라들의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이 국제 적범위에서 평균화되여 규정된다.

국제시장가격의 특성은 둘째로, 국제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

에 따라 그 가격이 부단히 변동된다는것이다.

국제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는 우선 경제적요인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는다. 경제적요인에는 국제시장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량적 및 질적요구, 지 역적 및 계절적요구가 속한다.

국제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는 또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 정치정세가 불안하고 군사적긴장상태가 조성되여있는 지역, 국제적인 체육경기나 예술축전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상품수요가 상품공급보다 많으므로 가격이 오르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국제시장가격의 특성은 셋째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의한 가격롱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것이다.

오늘 자본주의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가격은 발전된 나라들에는 유리하게, 경제력이 뒤떨어진 나라들에는 불리하게 설정된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자기들이 국제시장에서 파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품들에 대하여서는 독점적고률리유을 붙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며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사들이는 광물, 농산물 등 1차생산물에 대하여 서는 생산비도 보상할수 없을 정도로 가격을 낮게 적용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중요한 수탈굥간의 하나는 부등가 교환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상품수입량의 제한과 조절, 투매행위 등으로 국제시 장을 혼란시켜 저들의 상품가격은 끌어올리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상품가격은 떨어뜨림으 로써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한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국제경제거래에서 가격롱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것은 나 라들의 민족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2.2. 국제시장가격적용의 중요성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문제는 우선 대외무역에서 제기된다.

대외무역은 다른 나라에로의 상품수출과 다른 나라로부터의 상품수입을 의미하며 무 역상품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정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가격과 수입품에 대한 수입가격이 적용된다.

만일 무역회사나 외국투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 거나 수입하는 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수출입품가격편차리익 이 형성된다. 반대로 무역회사나 외국투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낮거나 수입하는 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수출입품가 격편차손실이 형성된다.

그런데 대외무역에서는 계약기래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계약가격이 적 용된다. 계약가격은 국제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 격이다. 계약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지만 국제시장가격이 시기마다 부단히 오르내 리는 조건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국제시장가격밖에는 반영하지 못한다.

무역회사와 외국투자기업들에서는 국제시장과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 다른 나라에서 물가가 올라갈 때에 계약하고 국제시장가격이 떨어질 때에 값을 물어주는 일. 다른 나라에서 물가가 떨어질 때에 계약하고 국제시장가격이 오를 때에 값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문제는 또한 외국투자거래에서 제기된다.

외국투자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투자 관리기관의 승인밑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을 창설할수 있다. 이때 투자되는 재산에는 화폐재산, 물자재산과 같은 재산과 공업소유권과 같은 재산권이 속한다. 그리 고 투자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 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된다.

만일 투자당사자들이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합의한 재산과 재산권의 가격이 국 내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몫을 인위적으로 과대평가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투자단계에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여주고 영업과정의 리윤 분배단계에서는 상대측의 리익배당규모를 인위적으로 늘여주며 기업의 청산단계에서는 외국투자가에게 청산되는 재산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외 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와 리윤분배에서 외국측 투자가들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국가와 우리측 투자가에게는 불리하게 함으로써 외국투자관계에서 실리를 보장할수 없 게 한다.

따라서 외국투자관계에서는 투자당사자들이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합의한 재산과 재산권의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이 설정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는것은 우선 외국투자기업들의 출 자몫을 바로 규정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외국투자기업들에 투자되는 화폐재산 또는 현물재산들의 가치는 매개 나라마다 외화 시세와 상품가격이 차이나는 조건에서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외국투자기업들에 투자되는 화폐재산 또는 현물재산들의 가치를 해당 나라의 외화시세와 상품가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들의 재산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수 없으며 이 기업들의 경영수입과 리윤확정, 리윤분배와 세무관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기업들에서 출자몫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평가하게 되여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의 출자몫을 외국측 투자가와 우리측 투자가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 여 합의하여 평가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국제시장가격 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국내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는것이다.

외국투자기업들에 출자하는 현물재산가운데는 그 재산들의 국제시장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높은것과 낮은것이 있을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에 출자하는 현물재산들의 국제시장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출자비률을 규정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며 현물재산들의 국내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 가하여야 출자비률을 규정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다.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공화국령역에서 경영활동을 진행 하므로 우리측 투자가들이 외국측 투자가들에게 국제시장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혀물재 산들을 출자하는데 대하여서는 외화로 가지고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 현물재산들을 구입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는것은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의 경 영수입과 경영지출, 리윤을 바로 평가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외국투자기업들은 경영활동상 국내기관, 기업소와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외국투자기업들은 국가의 유일계획이 아니라 기업자체계획에 따라 주로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자체의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세우고 집행해나가지 않으면 경영활동상손해를 볼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이 국제시장을 기본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벌리는 조건에서 원자재를 어떤 가격으로 구입하고 생산된 생산물을 어떤 가격으로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는 외국투 자기업들의 경영수입과 경영지출, 리윤을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들의 원자재비는 원자재구입량에 구입가격을 곱하여 결정되고 경영수입은 생산물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결정되며 리윤은 경영수입과 경영지출의 편차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외국투자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생산물을 판매실현할 때에는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한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들이 다른 나라 회사들과 거래할 때에는 국제시장에서 진행되는 경제거래관계이므로 원자재구입과 생산물판매에 응당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외국투자기업이 국내의 다른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할 때에도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영상독자성을 가지고 자체의 경영전략과 계획에 따라 보다 많은 외화를 벌기 위하여 다같이 기본상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하기때문이다.

특수경제지대의 외국투자기업들이 국내기관, 기업소들과 거래할 때에도 국제시장가 격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은 특수경제지대가 경제활동에서 법률상특혜가 보장되는 지역 으로서 특수경제지대의 외국투자기업들에는 다른 나라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것과 같 은 국제적수준의 경제적환경과 조건이 보장되기때문이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는것은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담보로 된다.

다른 나라 회사들과의 합영, 합작을 실리주의원칙에서 진행하는 문제는 세무관리개 선을 통하여 해결된다.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무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대상의 특성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세무관리사업을 창조적으로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재정성이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실속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재정성에서는 세무기관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르는 세무관리방법을 부단히 완성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방법을 완성하는데서는 외국투자기업들에 국제시장 가격을 바로 적용하는 문제가 그 중요한 전제로 제기된다.

외국투자기업들은 세무기관에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며 경영활동결과에 이루어지는 결산리윤규모에 기초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생산물에 대하여 거래세를 적용한다.

그런데 외국투자기업들의 출자몫을 평가하거나 경영수입과 경영지출, 결산리윤을 확정하는데는 국제시장가격이 적용된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국제시장가격 적용문제를 바로 해명하는것은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세무관리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2.3. 국제시장가격적용의 기본내용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문제는 첫째로, 출자몫확정에서 제 기된다.

외국투자기업은 회계를 계산도구로 하여 기업경영활동을 진행하고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재산들의 가치적크기를 평가한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측 투자가와 우 리측 투자가의 출자몫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따라 출자비률이 결정된다. 또한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규정된 출자비률은 기업경영활동결과에 이루어지는 리윤분배의 기초로, 기업청산단계에서 재산분할의 기초로 된다.

외국투자기업의 출자몫을 확정하자면 가치평가기준과 인정시점, 요구조건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하다.

외국투자기업의 출자몫확정은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 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외국투자기업에서 출자재산의 가치를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의해 평가하게 되는것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외국측 투자가와 우리측 투자가가 출자한 재산을 밑천으로 가지고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기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시장가격은 시기마다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따라 부단히 변동되므로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출자몫을 확정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사이에 계약이나 호상합의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몫은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의 투자검증을 받아야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때 출자몫으로 확정할수 있는 시점과 요구조건은 재산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다.

외국투자기업의 출자재산에 대한 회계검증기관의 투자검증은 경제적요구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기업운영자와 기업외부의 관계자들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분쟁을 공정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는 투자검증을 통하여 배당의 기초로 되는 자기 소유재산의 크기를 확정하며 채권자는 투자검증결과에 의하여 타산하며 세무기관은 과세대상으로 되는 외국인재산의 가치적크기를 평가한다.

외국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재산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것들은 출자경로와 기간, 출자후 생산경영활동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같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출자몫으로 확정할수 있는 시점과 요구조건을 바로 규정하지 않으면 출자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출자몫크기를 정확히 확정할수 없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재산권으로 진행된다.

화폐재산에는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이 속한다. 화폐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우리 측 투자가는 국가로부터 받은 내화은행예금으로 투자하며 외국측 투자가는 외화현금, 외 화예금, 외화유가증권 같은 외화로 투자한다.

화폐재산출자몫확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외국측 투자가가 합영, 합작계약에 반영된 전환성외화로 정확히 출자하고 출자되는 외화에 무역은행의 당일 결제시세를 정확히 적용하는것이다.

외화출자금은 무역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시세를 고려하여 정한 당일 결제 시세를 적용하여 조선원으로 확정한다.

화폐재산출자몫은 해당한 금액을 거래은행에 개설된 외국투자기업돈자리에 넣었을 때 인정한다. 그것은 화폐재산을 외국투자기업돈자리에 넣어야 생산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기때문이다.

현물재산에는 기계설비, 원자재, 부동산 등이 속한다.

현물재산출자몫확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출자되는 현물재산의 가치평가와 출 자인정시점을 바로 확정하는것이다.

현물재산출자몫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합의한 가격 또는 구입가격에 수송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등 부대비를 합한 금 액으로 확정한다.

부동산의 출자는 그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외국투자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낸 다 음 해당 재산등록기관에 등록하였을 경우 인정한다.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출자는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낸 다음 해당 외국 투자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경우에 인정한다.

외국측 투자가가 출자하는 헌물재산은 투자가의 소유이면서 외국투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 및 량적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이여야 한다.

재산권에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저작소유권, 토지리용권 같은것이 속한다.

재산권출자몫확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재산권의 가치평가와 그것이 총출자액 에서 차지하는 비률, 재산권의 출자인정시점과 재산권의 출자요구조건을 바로 확정하는 것이다.

재산권출자몫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쌍방이 합의하고 평가확인한 금액으로 확정하다. 이때 재산권의 출자비률은 총출자액의 20%를 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권의 출자는 해당 소유권증서를 외국투자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낸 경우에 인정하다.

재산권의 출자는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것이면서도 새로운 제품 을 생산하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는것,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것, 로력, 원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거나 공화국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는것, 외국투자기업 의 경영관리를 개선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문제는 둘째로, 재산구입과 재평가 에서 제기된다.

외국투자기업은 그 운영과정에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재산. 원자재와 같은 현물재산 에 대하여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시장에서 구입리용한다. 또한 외국투자기 업의 운영과정에 국제시장가격과 외화시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그에 따라 재산과 채무, 자본을 재평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구입하는 재산들에 어떤 가격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재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유지보존하고 기업경영활동결과를 바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구입하는 현물재산에는 크게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재산과 원자 재와 같은 물자재산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들이 외부로부터 유형고정재산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쌍방이 합의한 가격 또는 구입가격에 수송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등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등록계산한다. 만일 무형고정재산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국 제시장가격에 준하여 계약에서 합의한 거래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등록계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에 의하면 화폐재산은 잔고액 그대로 계산하고 단기채권은 실지 받기로 된 금액 또는 실지 지불한 비용으로 계산하며 물자재 산은 생산원가 또는 구입원가로 계산하는것으로 규제되여있다.

물자재산에는 원료 및 자재, 조립용 설비 및 비품, 소공기구비품, 용기 및 포장재, 로동보호물자. 경영용물자가 속한다.

외국투자기업들이 외부로부터 물자재산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시기의 구입원가 (구입가격)로 계산한다.

이때 물자구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물자구입경비가 발생한다. 물자구입경비는 외국 투자기업에서 물자재산을 구입하는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여기 에는 부가금, 수송비, 상하차비, 선별비, 보관비 등이 포함된다.

물자구입경비는 물자재산의 구입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물자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고정재산과 달리 물자구입경비를 따로 계산하는것은 물자구입경비가 물자 재산의 시초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으며 그 지출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요 구와 관련된다.

외국투자기업들이 고정재산이나 물자재산을 맞바꿈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는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거래가격에 관련되는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등록계산한다. 이때 맞바꿈하여 들여온 재산과 내보낸 재산의 등록금액사이의 편차액은 기타 업무손익으로 처리하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재평가의 대상은 재산과 채무 및 자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은 결산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산의 구입원가와 국제시장가격사이에 가격편차가 심할 경우 가격을 다시 계산할수 있으며 외화채권과 외화채무는 발생 또는 청산당시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 률에 따라 외화시세편차금을 리용하여 계산하는것으로 규제되여있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재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재평가하는것은 우선 이 기업들이 고정재산이나 물자재산을 주로 국제시장에서 구입하며 생산된 생산물의 대부분 을 국제시장에서 해당 시기 설정되는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실현시키는것과 관련된다. 따 라서 이 기업들이 재산을 유지보존하고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구입한 재산 들을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재평가하는것은 또한 국 제시장가격이 부단히 변동되는것과 관련된다.

국제시장가격이 부단히 변동되는 조건에서는 재산의 구입원가와 국제시장가격사이에 재평가손실이나 리익이 발생하다. 재평가손실은 국제시장가격이 재산의 구입원가보다 떨 어졌을 때에 발생하며 재평가리익은 국제시장가격이 재산의 구입원가보다 상승하였을 때 에 발생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결산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고정재산의 취득원가와 국제시장가격사 이에 편차가 심할 경우 고정재산가격을 재평가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이 구입한 고정재산과 물자재산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중앙 재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고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조치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리익이나 손실은 자본조정금의 재평가조정금으 로 처리한다.

결산기말에 달라진 국가기준환률에 따라 외화재산과 외화채무를 재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리익이나 손실은 자본조정금의 시세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문제는 셋째로, 생산물판매와 투자 및 그 상환과정에서 제기된다.

외국투자기업들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생산물판매와 투자활동을 진행하며 그 방 법론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기업활동의 재정상태와 재정적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또 한 이것은 청산단계에서 우리측 투자가와 상대측 투자가사이에 재산분할을 바로하기 위 한 담보로 된다.

우선 외국투자기업들의 생산물판매가격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의 생산물판매가격을 바로 규정하여야 하는것은 경영손실을 없애고 대외판매시장을 개척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생산물의 판매는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진행되며 특히 합영, 합작기업들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정해진 판매가격에 따라 생산물판매가 실헌된다.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생산물의 대외판매를 실현하는 문제는 경제개발구의 외국투 자기업들에서 직접적으로 제기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의하면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경제개발구가 국가에 의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경제개발구기업들이 국내일반지역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들보다 다른 나라 회사들과의 경제적련계가 보다 밀접한사정과 관련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 및 그 상환규모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투자 및 그 상환규모를 바로 규정하여야 하는것은 유휴화폐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투자상환을 제때에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된다.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 및 그 상환규모를 바로 규정하는 문제는 내용상 이 기업들의 투자재산규모와 합작기업의 투자상환규모를 확정하는 문제로 구분된다.

외국투자기업들은 앞으로의 경제적리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재산의 일부를 새로운 기업창설 및 다른 기업 등에 투자를 하게 된다.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재산은 1년내에 외화현금으로 전환이 예견되지 않은 재산으로 서 공화국령역안의 은행에 맡겨둔 장기은행예금, 다른 기업(산하기업포함)에 출자한 기 타 투자재산 등으로 구분된다.

장기은행예금은 실지 예금한 금액을 올리며 그에 대한 리자액은 리자를 지불받기로 계약된 시점에서 해당 기간 수입으로 계산하다.

기타 투자재산은 내용적으로 유형고정재산, 무형고정재산, 물자재산, 장기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외국투자기업이 유형고정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가격으로 올리며 감가상각루계액을 던 유형고정재산의 장부상금액과 합의한 가격과의 차 액은 기타업무손익으로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무형고정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류사한 무형고정재산의 출자시 점에서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가격으로 정하며 무형고정재산의 장부상금액과 합 의한 가격과의 차액은 기타 업무손익으로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물자재산으로 장기투자하는 경우에는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가격으로 정하며 장부상금액과 합의한 가격과의 차액은 기타 업무손익으로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장기채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지 지불한 금액으로 등록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대외투자재산은 어디까지나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실적으로 인정된다.

합작기업의 투자상환규모를 확정하는데서는 국제시장가격적용문제가 제기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에 의하면 투자의 상환 및 리윤분배와 관련하여 합 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 며 리유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합작기업들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환을 생산물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을 국 제시장가격에 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합작기업들을 창설할 당시 외국측 투자가의 출자재산을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평가하였으며 합작기업의 창설과 운영. 투자상환과정 에서 발생하는 재산가치평가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된다.

2.4.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기 위한 방도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그와 관련된 현실 성있는 방도를 찾아 주어지는 조건과 화경에 맞게 옳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보다먼저 외 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국제시장가격적용을 직접 맡아 진행하는 담당자들이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국제시장가격적용사업이 외국투자기업의 특 성에 맞게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이 부문 재정회계일군들의 책임성과 능력에 달려있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이 부 문 재정회계일군들이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외국투자기업법규에 정통하는것이다.

외국투자기업들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에 세워진 외국투자기업 관련법규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공화국의 법인기업체들이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 계일군들이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외국투자기업관련법규에 정통하여야 국제시장가 격적용에서 법적요구를 준수할수 있으며 외국투자기업활동과정에 우리측 투자가와 상대 측 투자가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편향없이 쌍방의 리해관계에 맞게 처리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부 문 재정회계일군들이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우리측 투자가와 상대측 투자가사이의 계약, 외국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규약을 바로 인식하는것이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계약이나 기업의 내부규약은 외국투자기업관련법규와 함께 외국 투자기업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규범이다. 따라서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 군들이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계약이나 기업의 내부규약에 정통하여야 기업활동과 정에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옳바로 처리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부 문 재정회계일군들이 실무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는것이다.

외국투자기업들에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독자적인 경제관리질서가 세워 지고 외국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가지 특혜가 적용되면서 경영활동이 진행되는것 으로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지 못하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외국투자관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문제는 출자몫확정, 원자재구입과 생산물 판매, 투자 및 투자상환과 같은 외국투자기업운영의 전과정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외국 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국제투자와 무역거래관계, 우리 나라 외국투자법률관계, 국 제금융과 세무관계를 비롯하여 대외경제관계와 관련한 다방면적이고 립체적인 지식을 소 유한 박식가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외국어학습을 강화하여 외국어자질을 높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의 투자유치와 기업운영사업은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에게 있어서 외국어는 기본무기의 하나로 된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외국어를 모르고서는 외국투자가들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외국어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외국투자기업회계와 관련된 전공외국어수준을 높여 다른 나라 거래회사들에서 들여보내는 계약문건이나 결제문건, 회계결산서의 경제적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우리의 리익에 맞게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은 국내기관, 기업소들과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활동을 진행하는것만큼 우리 나라 경제현실과 자본주의시장경기형편, 외국투자관계실천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한다. 특 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운영되여있는 경제무역지대들의 류형과 특징, 선진적인 관리운영방법과 경험가운데서 좋은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부문 재정회계일군들이 맡은 사업을 언제나 원칙대로 처리하고 경제도덕생활을 청렴결백하게 진행하는것이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생활양식에 물젖은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과 사업상련계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사업에서 원칙이 약하고 물욕에 빠지면 자본 주의사상문화에 쉽게 오염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질서가 문란해 지고 당의 대외경제정책이 정확히 관철될수 없으며 국가의 리익이 침해당하게 된다.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일군들은 높은 계급의식과 준법기풍을 세우고 외국투자관계와 관련한 당정책적요구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 질서대로만 사업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 하며 외국투자기업 재정회계규률을 어기는 현상,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기 위한 방도는 다음으로 국제시

장가격적용과 관련되는 외국투자법규범들을 수정보충하는것이다.

외국투자법규범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데서 의무적으로 준 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다. 그런것만큼 외국투자기업들이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면서 나 라의 경제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외국투자법규범들을 당의 정책적요구, 변화되는 대외경제환경과 조건에 맞게 부단히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현시기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외국투자법규범들을 수정보충하는데서 중요한것 은 우선 외국투자법규범들에서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 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와 관 련하여 외국투자기업들의 출자몫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는 출자재산의 가치평가와 관 련하여 외국투자기업창설을 위하여 출자하는 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치는 해당 시 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출자당사자들이 정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세칙》에서는 투자가의 출자 및 외부로부터 구입하 고정 재산의 등록금액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쌍방이 합의한 가격 또는 구입가격에 수송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등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제 되여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세칙》에 따라 물자재산. 고정재 산사이에 맞바꿈하여 들여온 재산의 등록금액을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거래가격 에 관련된 부대비를 합하여 계산하게 되여있다. 그리고 출자분으로 들여온 물자재산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쌍방이 합의한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때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유형고정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 세칙》에 따라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가격으로 올리며 감가상각루계액을 던 고정 재산의 장부상금액과 합의한 가격과의 차액은 기타 업무손익으로 계산하게 되여있다. 그 리고 무형고정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류사한 무형고정재산의 출자시점에서 국제시 장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가격으로 하며 무형고정재산의 장부상금액과 합의한 가격과의 차액은 기타 업무손익으로 계산하게 되여있다. 만일 물자재산으로 장기투자하는 경우에 는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의한 가격으로 계산하며 장부상금액과의 차액은 기타 업무 손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법규범의 규제내용에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해당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제시장가격이 어느 시점에서의 어느 국제시장가격인가 하는 것이다.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나라에 고정재산이나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러한 재 산들을 구입한 시점과 우리 나라에 출자하는 시점이 불일치할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고정재산이나 현물재산을 구입한 국제시장가격과 해당 재산기래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 시장가격이 차이날수 있다. 특히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고정재산이나 물자재산의 국제 시장가격이 해당 재산의 국내외화판매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을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이 재산출자나 재산구입에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구입시점현재 대표적인 국제시장의 가격을 선정하고 그것을 국내외화판매가격과 비 교하여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산출자와 재산구입과 관련하여 나라의 경제적리

익을 고수할수 있다.

반대로 외국투자기업들이 대외에 재산을 장기투자하거나 생산물을 판매실현하는 경우에는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과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가격사이의 편차액은 기타업무수입이나 기타업무지출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외국투자법규범들을 수정보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외국투자법규범들에서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규제내용의 일치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는 재정수입의 확정시점과 관련하여 재정수입은 최종적으로 생산물과 봉사대금이 출납, 금고, 은행돈자리에 입금되였을 때와 창고에 화폐적가치로 계산할수 있는 현물이 입고되였을 때 확정한다고 규제되여 있다.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세칙》에서는 제품, 상품판매수입의 확정계산과 관련하여 제품, 상품판매수입은 그것을 판매하여 넘겨주는 시점에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만일 행표결제로 진행되는 거래인 경우 판매수입은 제품의 발송과 관계없이 행표를 받고 해당 전표와 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넘겨준 후에 계산하도록 규제되여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은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세칙》에 따라 위탁판매수입은 수탁자 로부터 위탁품판매실적표를 접수한 시점에서 계산하며 분할판매계약에 따르는 판매수입 은 계약에서 합의한 판매대금접수날자에 계약된 받을 금액으로 확정계산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은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세칙》에 따라 전수금에 의한 거래인 경우 판매수입은 제품을 발송한 후에 계산하며 할인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수입은 실지 할인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결제시 실지 할인으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기타업무지출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과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세칙》은 제품, 상품판매수입의 확정계산과 관련하여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 판매대금입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투자기업회계법시행규정세칙》에서는 제품, 상품발송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본상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외국투자기업이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주의거래방법이 적용되고 외상거래가 허용되므로 제품, 상품의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기 위한 방도는 다음으로 국제시 장가격적용과 관련된 계약을 바로 체결하고 그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문제를 옳바로 처리하는것이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는 우선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맺는 사업을 옳게 하여야 한다.

계약은 우리 나라 경제강국건설의 현실적요구와 경제형편, 외화균형 그리고 자본주의세계의 경제동향과 국제시장에서의 경기변동 같은것을 전면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된 계약에서 대표적인것은 출자단계에서 회 계계산과 관련한 계약을 둘수 있다.

실례로 2010년 우리 나라 인터네트합작회사의 투자대방은 우리측 투자가에게 별회 사에서의 회계계산을 국제회계기준과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규범에 따라 진행하자 고 제기해왔다. 그 내용을 해석하면 별회사에서의 회계계산은 국제회계기준에 준하여 하 며 거기에서 규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규범에 따라 진행한다는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출자재산과 구입재산, 판매재산의 가치를 모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되여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출자재산의 가치를 국제시 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평가할데 대한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 업회계규범은 무시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인터네트합작회사에서의 회계계 산은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규범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행한다고 수정하여야 한 다. 그것은 우선 이렇게 하는것이 출자재산의 가치를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 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평가할데 대한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이렇게 하는것이 회계관련법규에서 규제하지 않은 경제거래와 관련한 회계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할데 대한 외국투자기업회계규정세칙의 내용을 준수하는것으로 되기때 문이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는 또한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문제를 옳바 로 처리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한 분쟁문제는 출자단계에서 발생한다. 실례로 2002년 어느 한 담배합영회사의 중국측 투자가는 담배중고설비를 출자하면 서 그 가치를 담배설비들을 처음 구입할 때의 원가로 평가하였다. 그 담배합영회사의 우 리측 투자가는 해당 기관의 도움밑에 그 담배설비들의 구입가격과 구입년도, 구입장소와 관련된 시초서류를 요구하였다. 또한 중국에서의 담배설비내용년한과 실지 사용한 년한,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을 구분하는 가격기준, 감가상각방법 등과 관련된 중국재정회계법규 를 연구분석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담배합영회사의 우리측 투자가는 담배중고설비의 재평가가치는 제안 한 출자몫의 66%밖에 안된다는 결론을 찾아내고 그것을 중국측 투자가들에게 납득시켜 우리측과 중국측의 출자비률에서 5:5의 균형을 보장하고 나라의 경제적리익을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국제시장가격적용과 관련한 분쟁문제는 기업운영과정에서도 발 생하다.

실례로 2006년 우리 나라 담배합영회사의 외국측 투자가는 담배합영회사의 운영과 정에서 고정재산감가상각계산을 하지 말것을 제안하였다.

고정재산감가상각이란 고정재산의 마멸가치를 고정재산리용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 물의 원가에 포함시켜 생산물이 판매실현되는데 따라 회수하여 적립하는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립된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해당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위한 자금원천으로 리 용된다.

상대측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계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생산물의 원가가 낮아지며 국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생산물의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리윤몫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 면 리윤의 일정한 비률로 납부하게 되여있는 기업소득세몫이 커지므로 국가세무관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분배할 리윤몫이 감가상각금몫만큼 커지게 되며 이것을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에게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상대측은 이러한 분배몫인 외 화자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해간다. 즉 우리 공화국의 령역에 있어야 할 외화자금이 해외 로 빠져나가는것으로 되므로 이것은 국가외화관리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담배합영회사경영의 견지에서 보면 해당 생산물생산의 원가가 줄어들므로 기업의 수 익성이 높아져 회사의 재정상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고정재산의 재생산 과 관련된 감가상각원천이 없어지므로 총체적으로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 대외결제은행의 견지에서 보면 해당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외화자금이 담배합영회사가 존재하는 전기간 우리 나라 대외결제은행의 돈 자리에 놓여있게 되지만 감가상각금계산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만한 자금이 대외결제은행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외국측에 분배된 외화자금만큼 외화가 우리 나라 대외결제은행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결국 대외결제은행의 외화관리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볼수 있다.

외국측 투자가가 이러한 제안을 한 진의도는 담배합영회사의 존속기간 우리 나라 대외결제은행에 있어야 할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매해 리윤의 형태로 앞당겨 자기 나라에 송금해가자는데 있다. 이렇게 외국투자기업운영과정에 발생하는 분쟁문제는 재산가치를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평가하고 재산평가에 국제시장가격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3. 결론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는 문제는 나라의 대외경제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맞게 부단히 수정보충하고 개선완성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국제시장가격을 바로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 야 한다.

실마리어 외국투자기업회계, 국제시장가격